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개정 : 2010. 11. 8

제1조(명칭 및 소재) 본 센터는 경희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이하“본 센터”라 한다)라 칭하고,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속기관으로 국제캠퍼스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센터는 산업사회의 요구와 교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학교육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공학교육의 교과과정을 연구하여 개선하며, 한국공학교육인증원(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ABEEK)의 공학인증 관련 제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여, 본교 공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조직) 본 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소장
2. 부소장
3. 프로그램 책임자(이하 “PD”라 한다)
4. 연구위원
5. 직원 및 조교 약간명

제6조(자격 및 임면) ① 소장, 부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교무처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면한다.

② PD는 해당 학과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③ 연구위원은 해당 학과의 전임교원으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④ 직원 및 조교는 본교 해당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7조(임기) ① 소장, 부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신규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조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직무) ① 소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통괄하고, 부소장은 소장

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 PD 및 연구위원은 각 학과의 전공 프로그램별 공학교육인증을 유지·운영하고 공학교육 과정 연구를 총괄하며, 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직원은 본 센터의 일반사무를 처리한다.

④ 조교는 본 센터의 제반업무를 보조한다.

⑤ 공학교육인증과 관련하여 각 단과대학의 행정실(장)은 소속 단과대학과 관련된 본 센터의 업무수행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 본 센터의 재정은 교비보조금, 외부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0조(회계년도)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보고) ① 소장은 회계년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 총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소장은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센터의 운영보고서(당해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사업추진 현황 및 활동실적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세 칙)이 규정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0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